

2012. 7. 12(목)
제210회 달성군의회(제1차 정례회) 제3차 본회의

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

檢 討 報 告 書

달 성 군 의 회
전문위원 차 형 근

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
검 토 보 고 서

1. 제출자 : 달성군수

2. 제출일자 : 2012. 6. 27

3. 제출이유

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(예비비)승인의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(예비비) 및 제134조제1항(결산)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.

4. 관계법령

- 지방자치법 제39조(지방의회의 의결사항)
지방자치법 제129조(예비비), 제134조 제1항(결산)
-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5조(결산 등의 심사)

5. 세입세출 결산규모

1) 총 팔

(단위 : 백만원)

예산현액	수납액	지출액	차 인 잔 액					
			계	명시 이월	사고 이월	계속비 이 월	보조금 집행잔액	순세계 잉여금
421,087	426,262	316,458	109,804	41,093	12,601	10,011	3,304	42,795

-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총팔은 예산현액은 4,210억 87백만원으로 수납액이 4,262억 62백만원, 지출액은 3,164억 58백만원이며 차인잔액은 1,098억 4백만원으로 명시·사고이월비 및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27억 95백만원임.

2) 세입결산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 회계별	예 현 액 <small>(가)</small>	정 수 결정액 <small>(나)</small>	실 제 수납액 <small>(다)</small>	미수 납액	미수납처리액		비 율(%)	
					결손 처분	이월액	<small>(다)/(가)</small>	<small>(다)/(나)</small>
합 계	421,087	441,167	426,262	14,904	1,801	13,103	101	96.6
일반회계	405,287	425,935	411,032	14,903	1,801	13,102	101	95.5
특별회계	15,800	15,232	15,230	1	-	1	96.4	100

- 전체 세입예산현액 4,210억 87백만원에 대하여
 정수결정액은 4,411억 67백만원으로
 수납액은 96.6%인 4,262억 62백만원이며,
 결손처분액이 18억 1백만원이고,
 다음연도 미수납 이월액이 131억 3백만원임.
-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,052억 87백만원으로
 정수결정액이 4,259억 35백만원,
 수납액은 95.5%인 4,110억 32백만원이며,
 결손처분액이 18억 1백만원이고,
 미수납 이월액은 131억 2백만원임.
-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58억원으로
 정수결정액이 152억 32백만원,
 수납액은 152억 30백만원 수납되었으며,
 미수납액은 1백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임.

3) 세출결산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 회계별	예산현액	지 출 액	다음연도 이 월 액	집행잔액
합 계	421,087	316,458	63,705	40,924
일반회계	405,287	314,770	63,705	26,812
특별회계	15,800	1,688		14,112

- 전체 세출예산현액 4,210억 87백만원에 대하여
 지출액은 3,164억 58백만원이며,
 이월액은 637억 5백만원으로
 이중 명시이월비가 410억 93백만원,
 사고이월비가 126억 1백만원, 계속비이월비가 100억 11백만원이며,
 이를 제외한 집행잔액이 409억 24백만원임.
-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 4,052억 87백만원에 대하여
 지출액은 3,147억 70백만원이며,
 이월액은 637억 5백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이
 268억 12백만원으로 그 중 예산집행잔액이 72.2%인
 193억 63백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.
-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 158억 원에 대하여
 지출액은 16억 88백만원이며,
 당해연도 예산의 이월은 없음.
 집행잔액이 141억 12백만원으로 예산집행 잔액 및 예비비가
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.

4) 예산의 이용 · 전용 · 이체사용

○ 예산이용 : 해당없음

○ 예산전용 : 17건

(단위 : 천원)

조직	부문	세부사업	통계목	예산액	전용금액		사유
					감액	증액	
계			17건	6,310,905	223,871	223,871	
토지 정보과	일반 행정	국유재산관리	사무관리비	18,366	5,000		• 구청사 감정평가 비용 지출에 따른 과목변경
		공유재산관리	사무관리비	40,650		5,000	
경제 지원과	노동	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관리운영	재료비	195,000	2,100		• 2011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중 중소 기업 취업지원에 따른 과목변경
		“	민간 경상보조			2,100	
	“	“	재료비	192,900	18,978		•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
		“	기간제근로 자 등 보수	583,888		18,978	
문화 체육과	문화 예술	다사문화 복지센터 운영	자산 및 물품취득비	1,070,000	35,000		• 달성문화센터 자산 중 S/W구입 및 사무용품 구입을사무관리비로전용
		“	사무관리비			35,000	
	“	“	자산 및 물품취득비	1,035,000	100,000		• 달성문화센터 비품 및 기타 물품구입비를 사무 관리비로 지출코자함
		“	사무관리비	35,000		100,000	
환경과	상하 수도 · 수질	오수축산 폐수·공중 화장실	자산 및 물품취득비	10,000	10,000		• 저소득층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사회 보장적수혜금으로 전용코자함
		“	사회보장적 수혜금			10,000	

조직	부문	세부 사업	통계목	예산액	전용금액		사 유
					감액	증액	
보건 의료	보건 의료	금연지원사업	의료 및 구료비	48,500	2,831		• 2011년 금연지원사업 변경으로 전용이 필요함
		"	사무관리비	13,517		2,831	
	"	"	의료 및 구료비	45,669	20,669		• 2011년 금연지원사업 변경으로 전용
		"	기간제근로자 등 보수	21,564		20,669	
	"	"	민간위탁금	5,600	5,600		• 금연클리닉사업 변경에 따른 전용이 필요
		"	사무관리비	7,917		5,600	
	"	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사업	사무관리비	4,004	506		•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변경으로 전용
		"	기간제근로자 등 보수	18,698		506	
	"	"	의료 및 구료비	78,044	296		•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보충사업 변경으로 전용
		"	기간제근로자 등 보수	19,204		296	
보건과	"	한방 건강증진	사무관리비	21,121	9,000		• 한방허브보건사업 확대시행에 따른 소요 예산 증가로 예산과목 변경
		"	의료 및 구료비	31,916		9,000	
	"	국가만성병 예방	의료 및 구료비	1,500	1,500		•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사업이 변경되어 전용코자함
		"	사무관리비	7,500		1,500	

조직	부문	세부사업	통계목	예산액	전용금액		사유
					감액	증액	
농축 산과	농업	구제역 방역	재료비	1,316,685	6,600		• 구제역 발생감소로 인한 간이소독시설 철거에 필요한 지출 과목 전용
	농촌	"	시설비	28,000		6,600	
	"	"	재료비	1,310,085	3,300		• 구제역 예방백신 보관 냉장고 구입에 따른 예산전용
		"	자산 및 물품취득비			3,300	
시설 관리 사업소	기타	기본경비	공·공운영비	99,825	232		• 조직개편에 따른 직급 보조비 부족 과목변경
		인력 운영비	직급보조비	18,240		232	
	"	기본경비	국내여비	14,040	2,259		• 조직개편에 따른 직급 보조비 부족 과목변경
		인력 운영비	직급보조비	18,472		2,259	

• 예산 전용은

일반회계 2억 23백만원(17건)으로서

전용 사유를 보면 물품구입비 및 금연지원사업비 등으로 예산 수립단계에서부터 조금만 신중을 기한다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유로 판단되는바, 향후 예산 편성 시부터 세밀한 계획이 요구되며, 예산 전용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○ 예산이체는

84건에 216억 90백만원으로서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사항임.

5) 계속비 집행

1건에 24억 9백만원으로 달성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중 시설비, 감리비, 시설부대비 집행사항임.

6) 예비비 지출

(단위 : 천원)

부서명	사업 내용	지출결정액	지출액	사 유
계	9건	2,244,143	1,275,020	
기획감사실	송무업무수행 지원 (배상금 등)	191,000	191,000	· 환경미화원 퇴직자 임금소송 배상금 지급
경제지원과	공공근로사업 관리운영 (기간제근로자 등 보수)	300,000	294,083	· 청년실업 및 취약계층 증가에 따른 공공근로사업비 증액을 통한 일자리제공 및 실업대책 구현
건설과	도로보수 관리 (재료비)	30,000		· 강설대비 제설작업용 염화 칼슘 구입
치수방재과	재난안전관리 (민간인재해보상금)	317,000	317,000	·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보상금 지급
농업정책과	농작물재해복구비 지원 (민간인재해보상금)	49,000		· 저온에 따른 농작물 피해 복구비 지출
"	구제역 방역 (기간제근로자 등 보수)	317,400	152,027	· 위기경보 최상위 심각단계인 구제역바이러스 차단 및 효율적 방역

부서명	사업 내용	지출결정액	지출액	사유
농업정책과	구제역 방역 (사무관리비)	136,350	29,943	· 위기경보 최상위 심각단계인 구제역바이러스 차단 및 효율적 방역
"	구제역 방역 (공공운영비)	56,000	4,087	· 위기경보 최상위 심각단계인 구제역바이러스 차단 및 효율적 방역
"	구제역 방역 (재료비)	819,393	286,880	· 위기경보 최상위 심각단계인 구제역바이러스 차단 및 효율적 방역
"	구제역 방역 (시설비)	28,000		· 위기경보 최상위 심각단계인 구제역바이러스 차단 및 효율적 방역

○ 예비비 예산액은 58억 40백만원으로
재난안전관리사업 등 9건, 22억 44백만원을
지출결정하여 12억 75백만원을 지출하고
9억 69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.

7)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계		명시이월		사고이월		계속비이월	
	건수	사업비	건수	사업비	건수	사업비	건수	사업비
계	352	63,705	235	41,093	114	12,601	3	10,011
일반회계	352	63,705	235	41,093	114	12,601	3	10,011
특별회계	-	-	-	-	-	-	-	-

○ 일반 · 특별회계의 명시 및 사고이월비 현황은
총 352건에 637억 5백만원으로 건수는 전년(268건)보다 7.6%가
늘었고, 이월사업비는 9.2%가 증가하였으며, 앞으로 건설사업 등에
있어서는 예산편성 전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치밀한 조사,
추진방향, 예산규모가 검토되어 예산편성 되어야 할 것이며, 사업
또한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6. 채권·채무

가. 채권액

전년도말 채권현재액은 38억 85백만원으로

당해연도에 6억 44백만원이 발생하고 32백만원이 소멸되어,

당해연도말 채권현재액은 44억 97백만원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 회계별	전년도말 현 재 액	당 해 연 도		당해연도말 현 재 액
		발 생 액	소 멸 액	
합 계	3,885	644	32	4,497
일반회계	3,882	644	31	4,495
특별회계	3		1	2

*소멸액: 이행기간 도래액

나. 채무액

전년도말 채무현재액은 64억 82백만원으로

당해연도에 17억 96백만원을 상환하여

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6억 86백만원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 회계별	전년도말 현 재 액	당해연도증감액		당해연도말현재액	
		채 무 행위액	상 환 소멸액	계	원 금
합 계	6,482		1,796	4,686	4,686
일반회계	6,482		1,796	4,686	4,686
특별회계	0		0		0

* 상환소멸액 : 국고, 지방비 상환기한 도래액

7. 재산

가. 공유재산

당해연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20,877,560m²/5,906억 40백만원, 건물 232,103m²/1,369억 93백만원, 기타 3,442억 38백만원으로서 총 1조 718억 71백만원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 : 백만원)

전년도말 현 재 액	당 해 연 도 증 감 액			당해연도말 현 재 액
	계	증	감	
1,041,700	30,171	33,632	3,461	1,071,871

나. 물 품

당해연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409종 45억 9백만원으로 당해연도에 신규취득 등으로 7억 35백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등으로 1억 32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 : 건, 백만원)

전년도말 현 재 액	당해연도 증감실적						당해연도말 보 유 액	
	계		취득(증가)		처분(감소)			
건수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	
395	3,906	43	603	51	735	8	132	438 4,509

8. 기 금

현재 설치·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0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72억 97백만원이며, 당해연도 수납액 16억 90백만원, 지출액 4억 18백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85억 69백만원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 종류별	전년도말 현 재 액	당해연도 수 납 액	당해연도 지 출 액	당해연도말 현 재 액
합 계	7,297	1,690	418	8,569
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	271	22	33	260
자활기금	568	16		584
장애인복지기금	491	76		567
노인복지기금	552	18	17	553
체육진흥기금	343	30	4	369
환경보전기금	440	16	2	454
식품진흥기금	114	73	79	108
재난관리기금	3,080	833	255	3,658
농업인조직체육성기금	938	90	28	1,000
보훈회관건립기금	500	516		1,016

9. 금고의 결산

가. 세입·세출

(단위 : 원)

구 분	세 입	세 출	잔 액
합 계	426,262,883,467	316,458,555,446	109,804,328,021
일반회계	411,032,021,500	314,770,531,869	96,261,489,631
특별회계	15,230,861,967	1,688,023,577	13,542,838,390

나. 세입세출외현금

(단위 : 원)

구 분	수 입	지 출	잔 액
세입세출외현금	7,787,726,401	5,877,990,420	1,909,735,981

금고결산 현황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고가 제출한 2011년도
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의 금액과 일치하였음.

10.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 등

1) 일반회계

○ 세입부문

1) 지방세 징수 및 체납세의 결손처분 개선방안 검토

<지방세 징수율 제고방안>

- 2011회계연도 지방세 세입현황을 검토한 바 지방세 수납율은 91.5%로 전년에 비해 다소 향상되었음. 이는 해당부서의 적극적인 징수활동에 의한 성과로 판단되며
- 향후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군청 홈페이지 및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등을 통한 세목별 납기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체납자에 대하여는 차량번호판 영치, 급여압류 등 보다 강력하고 내실있는 행정을 추진함으로써 체납자의 의식을 변화시켜 안정적인 지방세 징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.

<결손처분자에 대한 사후관리철저>

- 2011회계연도 미수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은 12.1%로 전년 (23.1%) 대비 다소 낮아졌으나 시효완성으로 인한 결손처분이 높아지고 있는 바, 이는 조세 부과시점에서부터 문제점은 없었는지 재검토가 필요하고 무재산자에 대하여는 결손처분후에도 주기적으로 추적관리하는 등 지방세 채권확보를 위해 보다 다양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할것임.

○ 세출부문

1) 읍면별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

- 2011년 읍·면별 예산집행을 검토해 본 결과 예산대비 집행잔액이 평균6%정도임. 논공읍, 옥포면, 구지면의 경우 예산집행 실적이 부진하며, 특히 구지면의 경우 집행잔액이 예산대비 10%를 초과하고 있음.
- 지방재정법 제3조(지방재정의운용의 기본원칙) 및 제36조(예산의 편성)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고
-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예산편성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·분석하여 합리적인 수요예측에 근거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
- 미집행사유 발생 및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추경예산편성시 삭감 조치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을 도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.

2) 이월사업비 집행실적 부진

- 당해연도 이월사업에 대한 집행현황을 검토해 본 결과 전년도에 비해 집행비율이 높아졌다고는 하나(21%→37%) 2012. 5월말 현재 미집행비율이 전체 이월사업의 13.6%로 회계연도를 감안하면 부진한 실정임.
- 당해연도 이월사업에 대한 진도별 현황을 검토해 본 결과 결산일 현재 50%미만 사업이 전체 이월건수 204건중 139건(68%)에 달하며, 그 중 51건(25%)은 미착공 상태로 사업진도가 극히 부진함.

- 이월사유를 살펴보면

이월되고 있는 예산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서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, 공사기간 미도래 등 반복되는 이유로 이월하는 경우가 대부분임.

특히, 담당부서 및 유관기관간 업무협의 지연, 당초 계획변경 등 예산확보전 검토가 가능한 이월사유 등은 시정 조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3) 여행바우처사업 운영 활성화

- 취약계층의 복지향상 및 국내 관광 수요 확대를 위해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
- 경제적, 신체적, 사회문화적 제약 등으로 인해 국내여행에 쉽게 참여하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, 법정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여행 기회를 제공하고, 이들의 여행참여 및 관광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관광향유권 증진 기여를 목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여행바우처 사업을 검토한 결과
- 재원이 기금 70%, 시비 15%, 군비 15%로 구성되는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2011년의 경우 한정된 계층에 극소수의(대상자중 1.2%) 인원만이 선정되었음.
- 2012년도에는 전년대비 150%의 예산이 증액되어 실시되고 있고, 전년도 수혜자들의 호응이 좋았다는 군 자체 평가로 향후 적극적인 매칭사업비 요구를 통해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다양한 운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.

4) 생활체육 육성지원 사업 활성화

- 저소득층, 유·청소년의 스포츠활동 참여기회 확대 및 체력향상과 건강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사회통합에 기여코자 실시하는 체육바우처 사업을 검토해 본 결과
- 2012년 예산이 전년대비 31% 증액되고 향후 주 5일수업 등으로 참여 및 수혜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 바
- 적은 군비 투입으로 다수에게 지원 확대할 수 있는 국민체육기금의 지방비 매칭사업임을 감안할 때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 노력에 따라 사업성과가 좋아질 것으로 판단됨.

5) 농촌 빙집 정비사업 조기 완료

- 빙집이 장기간 흉물로 방치되어 도시미관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관리소홀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노출 및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농촌 빙집 정비사업을 검토한 결과
- 1가구당 철거 지원금액은 점차 늘어가고 있으나 가구수는 줄어들고 있고, 2012.5월말 현재까지 전체대비 30%에 머물고 있음.
- 따라서 관내 곳곳에 방치되어 있는 노후·불량 주택을 사전에 철거하여 우범 장소 제거 및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예산확보와 홍보활동으로 조기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.

6)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 적극 추진

- 농가도우미제는 출산농가의 신청에 의해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신하고 도우미 임금의 80%수준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생산적 복지시책으로 농업노동의 이중고를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되는 바
- 2011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도·농 복합도시인 지역여건을 감안 하더라도 현재도 농사를 짓고 있는 대상농민이 있다고 볼 때 사업예산 대비 집행 실적이 극히 저조함.
- 따라서 가사와 농업노동으로 이중 부담을 지고 있는 여성농업인들에게 부족한 농촌노동력을 보충하고 출산여건이 열악한 여성 농업인들의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의 효과를 배가하기 위해서는
-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이지만 제도를 알지못해 수혜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과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.

7) 생축사업장 설치 사업 조기 완료

- 우량송아지 생산기반 확충, 고품질 한우생산 및 육성으로 지역 특화 브랜드 육성을 위한 생축장 설치 사업을 검토해 본 결과
- 사업시행자인 달성축산업협동조합에서 2010년 자부담 3억 5천만 원으로 부지매입을 한 후 2011년 생축장 설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

- 당초 사업예정지(구 달성위생사업소 부지)의 건축물철거비 상승 등으로 매입포기한 후 대체부지를 물색하고 있으나 부지매입가 상승, 여건변화 등으로 결산일 현재 사업추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
- 사업시행자인 달성축산업협동조합과의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예산이 불용되지 않고 회계연도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11. 종합의견

■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,

○ 먼저,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있어

수납액 4,110억 32백만원은 예산현액 대비 101%로 전년도와 비슷하고, 징수결정액 4,259억 35백만원과 비교하면 수납액이 96.5%로서 대체로 양호한 수준이며 세입예산 과목별 징수결정 및 수납에 있어 지방세 수입은 징수결정액대 실제수납액의 비율이 91.5%로 전년도보다 다소 높아진 반면 세외수입이 93.2%로 전년도보다 다소 낮아졌으나 매년 지방세수가 증가 추세임을 고려하여 과세자료정리 및 조세채권의 관리 등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, 자동이체방식에 따른 세액공제 등을 통해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○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있어서는

지출액이 3,147억 70백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77.6%이고 전년도 (79.6%)에 비해 2% 감소된 것은 편입토지보상협의지연 등의 영향도 다소 작용하였다고 보여지고, 다음연도 이월액이 637억 5백만원으로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투자의 효율성이 향상되었다고 보여지며, 또한, 집행잔액이 268억 12백만원으로 전년도(253억원)에 비해 0.5% 증가하였으며 예산 편성과 집행, 예산절감 등 재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며, 보조금집행 잔액(32억 42백만원)을 줄이고 특히, 예비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.

○ 특별회계 세입·세출결산에 있어서는

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99.9%인 152억 30백만원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며,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11%인 16억 88백만원, 집행 잔액은 89%인 141억 12백만원으로 예비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며,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짐.

그 밖에 결산항목에 있어서는

- 세출결산액은 금고출납계산서상의 지출액과 부합하며
- 예산의 이용·전용·이체사용에 있어서 당해연도 사용액은 없으며
- 채무부문은 규모면에 있어서 우려할 사항이 아니며,
- 이상과 같이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 한 결과,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 의견과 같이 적법한 절차에 의거 변동내용과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판단되며

- 아울러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은 이후 같거나 유사한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재정계획의 수립과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
- 일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군정질의를 통해 개선방안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.